

女服袍에 관한 研究

權 錫 琅

(대구 경상 여상)

| | |
|-----------------|---------------|
| <目 次> | |
| I. 序言 | ② 統一新羅時代の 女服袍 |
| II. 袍의 固有構成과 發展 | ③ 高麗時代の 女服袍 |
| 1. 女服袍의 固有樣式 | ④ 朝鮮王朝의 女服袍 |
| 2. 女服袍의 變遷相 | III. 結言 |
| ① 三國時代의 女服袍 | 參考文獻 |

I. 序 言

袍라는 것은 釋名에 「袍苞也苞內衣也」라 함과 같이 바지저고리 위에 더 입는 over coat 形의 옷을 말하는데 現今에는 두루막 또는 두루마기라 한다.

袍는 防寒의 目的에서 起源한 것이라 하겠으나 其後 人智와 文明이 發達함으로서 儀禮의 性格이 더욱 濃厚하여 衣冠整齊에는 袍의 存在가 必需的으로 되어 있어 最近世까지도 所謂 兩班家에서는 在室中에도 袍를 입는 것이 通常禮儀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袍의 起源과 始用時期는 어느 때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文獻上으로는 三韓時代에 着用했다 하는 記錄이 있고 三國時代에는 麗濟羅에서 同一하게 身分貴賤없이 男女間에 通用했던 普遍的衣服으로 發達했던 것이다.

袍도 他服飾과 더불어 外來(中國) 影響으로 變貌하고 時代相에 따라 變遷했으나 本稿에서는 主로 女人便服袍에 관한 變遷過程을 探求하여 整理하고자 하나 그 研究結果가 우리나라 服飾 研究에 寄與가 될는지 悚懼할 따름이다.

II. 袍의 固有構成과 發達

1. 女服袍의 固有樣式

우리 나라에서 袍를 언제부터 着用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三國志東夷傳扶餘條에

在國衣尚白 白布大袂袍 袴履革踏 出國則尚繒 繡錦罽 大人加狐狸狢白黑貂之裘以金銀飾帽

이라 하였으니 扶餘 사람은 白色衣를 좋아하여 白布로 소매 큰 袍를 만들어 입었으며, 바지와 革履를 신었다. 出國하게 되면 繒繡와 같은 비단옷을 입고 大人과 같이 지체높은 사람은 狐狸狢貂 등의 毛皮로 만든 白黑色의 裘를 입으며, 冠帽에는 金銀으로 裝飾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裘는 毛皮로 옷을 만든 것으로 挹婁條에 依하면 挹婁人은 養豚하는 것을 잘하고 冬節에 禦寒하기 위하여 猪膏를 몸에 바르는데 두께가 數分이나 되며 肉은 먹고 皮는 옷을 짓는다고 함과 같이 狩獵과 牧畜으로 얻은 毛皮가 衣服으로 사용되었으니 裘衣는 衣服發生期의 原始的인 袍의 樣式이라 할 수 있다.

同書韓條에

「其人性強勇 魁頭露紒如炁兵 衣布袍足履革蹠蹠」

이라 하다. 卽 韓人은 性品이 強勇하고 쌍투 바람에 布袍衣를 입고 革履를 신었는데 날선 兵丁과 같다고 하였다.

이 記錄으로서도 馬, 辰, 辨 등의 三韓에서도 布로 된 袍衣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男女가 同一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記錄上에는 三國時代以前에 白布大袂袍, 白黑裘, 布袍를 입었다고만 있어 그 構成樣式은 알 수 없으나 多幸하게도 高句麗時代古墳壁畫中에는 袍를 着用한 人物圖가 많이 있어서 當時의 袍樣式을 알 수 있다.

高句麗가 平壤으로 遷都하기 以前時代의 古墳이 滿洲輯安縣通溝地方에 많이 所在하고 있는데 其中 角觥塚主室奧壁의 壁畫人物圖¹⁾에 오른편 두 女人과 뒤에 서 있는 女人은 머리에 巾帽(唐書에 巾帽이라 하였음)을 쓰고 잔주름이 있는 치마 위에 袍를 입었는데 圖 1과 같이 깃, 도련袖口 등 裾端에는 異色襖을 들렀으며, 허리에는 帶를 뒤로 맺어 길게 느리우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민 直領交衽式이고 소매가 좁은 窄袖形이다.



圖 1 角觥塚主室奧壁 壁畫人物(高句麗)

또 同地方에 있는 舞踊塚主室右壁에 男女가 混舞하는 人物圖²⁾를 보면 圖 2와 같이 둘째와 셋째의 두 女人은 角押塚에 있는 袍와 같이 깃부리, 도련에 異色襖을 두르고 허리에 腰帶를 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민 直領交衽式의 窄袖

袍를 잔주름이 있는 치마 위에 입고 있으나, 소매길이가 大端히 긴 것이 特異하다.

그리고 첫번째 男子와 다른 두 사람도 소매길이가 大端히 긴 저고리를 입고 있는데 그 모양은 袍와 同一하나 저고리길이가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것이 相異하다.

이러한 長袖의 袍와 저고리는 오늘날 民俗舞踊用의 長袖服과 같이 特殊舞踊服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同塚主室右壁左側壁畫에는 圖 3과 같이 두 女人이 廚房에서 食床을 손에 받쳐 들고 나오는데 點紋 바탕의 袍를 입고 있다. 여기의 袍樣式도 角觥塚의 袍와 同一하다.

同塚主室右壁天井人物圖에는 圖 4와 같이 두 男子가 平床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검은 袍를 입었으며 한 사람은 흰 袍를 입었으나 깃이 直領이 아니고 曲領이고 품과 소매도 寬闊한 襖袖形인 것이 特異하다.

여기에 있는 曲領襖袖袍를 盤領袍라 하고, 男子들이 公廳에서 입었던 公服이라 하였다.³⁾

或 그렇다고 한다면 當時에 中國에서와 같은 公服制度가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圖 2 舞踊塚主室右壁人物圖

또 通溝所在의 三室塚壁畫(通溝下冊圖版)에도 襖袖袍를 입은 男子人物圖가 있고 四神塚壁畫(通溝下冊圖版)에도 男子가 黑色袍를 입은 것이

1) 池內宏, 梅原末治共著, 通溝下冊圖版
2) 池內宏, 滿洲國安東省輯安縣高句麗遺蹟, 圖版
3)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1973, 亞細亞文化社, p. 355



圖 3 舞踊塚主室右壁左側人物(高句麗)



圖 4 舞踊塚主室右壁天井人物圖

있다.

이와 같이 3,4世紀頃의 高句麗時代古墳壁畫에 依하면 盤領襖袖袍와 舞踊袍 그리고 直領窄袖袍 등이 있으나 우리의 固有袍樣式은 裾端에 異色 襖을 두르고 허리에 腰帶를 뒤로 맏고 옷깃이 直線이며 소매가 좁은 直領交衽의 窄袖形이라 할 수 있다.

2. 女服袍의 變遷相

① 三國時代의 女服袍

三國時代의 女服袍에 관한 記錄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北史東夷傳高句麗條에

「服大袖衫大口袴 素皮帶黃革履 婦人裙襦加襖」
이라 하고

百濟條에

「婦人不施粉黛 辨髮重後已出嫁則分爲兩道盤於
頭上 衣似袍袖微大」

라 하였으며

新羅條에

「服色尙素 婦人辨髮繞頭 以雜采及珠爲飾」

이라 하였다.

以上記錄에 依하면 高句麗에서는 大袖衫과 大口袴를 입고 素皮帶를 허리에 맏으며 黃革履를 신는다. 婦人은 치마 저고리의 裾端에 襖을 두

른 것을 입는다 하고 百濟婦人은 脂粉으로 化粧하지 않고 머리를 땅아 뒤로 느리우는데 出嫁하면 두갈래로 머리를 나누어 頭上에 얹는다. 저고리는 袍와 비슷하고, 소매가 크다. 新羅女人은 白色衣를 좋아하고 머리를 땅아 머리(頭)에 감으며 雜采와 珠玉으로 裝飾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裙襦加襖이라 하고 衣似袍袖微大라 하였음을 보아서 三國時代의 女服도 固有樣式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만 소

매와 바지통이 넓어졌다는 事實을 알 수 있으나 이것도 上流層의 社會的地位向上과 權威意識의 發露現象에 起因한 것이라 하겠으니 下流庶民層은 固有의 窄袖形에서 이렇다 할 變化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衣服習俗은 麗, 濟, 羅三國이 大同小異하고 地方的으로 部分的 差異는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高句麗長壽王二十年에 平壤으로 遷都한 以後의 平壤地方所在의 古墳壁畫를 비롯하여 新羅百濟時代古墳에서 出土된 遺物에 依하여 當時의 服飾制度를 알 수 있는데 平壤大同郡魯山里에 있는 鎧馬塚 玄室天井壁畫에 있는 女人圖⁴⁾는 圖

4) 關野貞, 高句麗時代의 遺蹟, 圖版下冊

5와 같이 袍의 소매는 大端히 넓고 길며 裙端의 襖도 많이 넓고 裝飾的으로 되어 있다.

平南龍岡郡梅山面花山里에 있는 龕神塚前室西壁北便에 있는 女人圖⁵⁾의 袍는 圖 6과 같이 것이 둥글고(團領) 길이가 大端히 길어서 발등이 보이지 않고 아래(도련)는 펴져서 넓으며, 裙端에 襖을 두르고 허리머에는 행주치마 같은 것을 앞에 하고 등 뒤에는 도투락뎡기 같은 것을 길게 느리우고 있어 참으로 優麗한 스타일을 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特異한 樣式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袍樣式은 우리 固有의 袍가 이렇게 變化한 것이 아니라 龕神塚이라는 塚名과 더불어 앞치마같은 것은 祭服에 있는 蔽膝이요 등뒤의 큰 뎡기같은 것은 祭服의 綬임이 틀림없으므로 이 袍는 祭服用의 特殊袍라 한다.⁶⁾

이러한 스타일의 袍가 東晉人顧凱之의 女史箴圖⁷⁾(倫敦大英博物館所藏)에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圖 7參照) 中國六朝風의 影響이 많다는 事實을 알 수 있는 것이다.

② 統一新羅時代의 女服袍

新羅第二十八代眞德王二年에 親唐外交政策에



圖 5 鎧馬塚玄室天井 壁畫女人圖



圖 6 龕神塚前室西壁 女人圖



圖 7 顧凱之의 女史箴圖

依하여 金春秋를 入唐케 하여 服飾襲用을 請願 함으로써 唐太宗으로부터 衣帶를 賜與받아 돌아 온 以後로 以夷易華라고 할 程度로 우리 服飾이 唐風으로 變遷했다 하고⁸⁾

文武王四年에는

「又革婦人之服 自此已後 衣冠同於中國」⁹⁾

이라 한 것과 같이 新羅는 三國統一을 契機하여 諸般制度革新策의 一環으로 服飾도 中國唐俗으로 改革하여 婦女服飾도 中國과 同一하다 했으나 이것 또한 特殊階層에 限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第四十二代眞德王은 奢侈를 禁하고 服飾紀綱을 세우기 위하여 斷行한 規制記錄에 依하면 袍類에 關한 것은 다음과 같다.¹⁰⁾

表衣에 對하여 眞骨女는 罽繡錦羅를 禁하고, 六頭品女는 中小紋綾絁絹만을 쓰고 五頭品女는 無紋獨織만을 쓰고 四頭品女는 綿紬以下만을 쓰고 平人女는 綿紬布만을 쓰게 하였다.

新羅에서는 袍를 表衣라 하여 身分貴賤 없이 男女가 다 입었으나 옷감에 있어서 差異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當時의 袍構成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三國時代와 同一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半臂라는 옷이 처음으로 보이는데 眞骨女는 規制가 없고 六頭品女는 罽繡羅總羅를 禁하고 五頭品女는 罽繡錦野草羅總羅를 禁하고 四頭品女는 小紋綾絁絹以下만을 쓰게 하였다.

5)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2冊

6) 權桂淳, 韓國服飾의 文化史的研究, 1969, 曉星女大研究論文集, 前篇

7) 原田淑人, 漢六朝의 服飾, 1937, 東洋文庫, 圖版 29~34

8) 三國史記, 卷三十三, 色服新羅條

9) 前揭書

10) 前揭書

半臂는 表衣를 입은 위에 儀禮的으로 입었던 옷으로 男女가 通用했으나 平人層 以下에서는 입는 것을 禁한 듯하나 半臂의 樣式은 圖 8과 같이 戰服 또는 袴護와 비슷한데 芝峰類說에 依하면

「唐高祖減其袖 謂之半臂 今背子也」¹¹⁾

라 함과 같이 오늘날의 背子와 같은 것으로 唐代에 始用한 唐服飾임을 알 수 있다. 半臂外에 唐服飾을 踏襲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女人들의 裱와 褙褳이 있는데 裱라는 것은 唐女人들의 領布와 같은 것으로 목에서 앞가슴에 걸쳐 드리운 목수건이고 褙褳은 오늘날의 短背子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統一新羅時代에는 冠飾을 비롯하여 唐服飾을 많이 踏襲하고 있었으므로 衣冠同於中國이라 한 것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 하겠다.

③ 高麗時代의 女服袍

高麗時代服飾에 關한 記錄은 高麗第十七代仁宗六年(1128年)에 來朝한 宋使一行中에 徐兢이 纂述한 宣和奉使高麗圖經¹²⁾에 依하면 婦人服條에

「婦人之飾不喜塗澤於粉無朱柳眉半額 皂羅蒙首製以三幅幅長八尺 自項垂下唯露面目餘悉委地 白紵爲袍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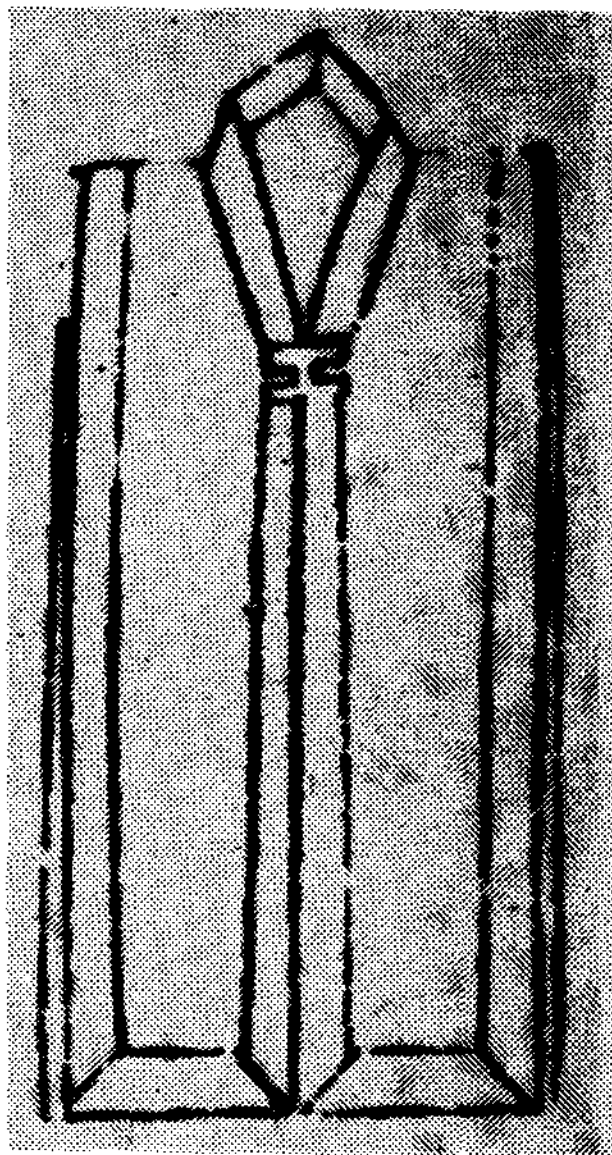


圖 8 三才圖會의 半臂

如男子 製文綾寬

袴衷以生絹 欲其褻裕不使着體 橄欖勒巾加以采條金鐸 佩錦香囊以多爲貴 富家籍以大席侍婢傍列 各執巾瓶雖盛暑不以爲苦也 秋冬之裳間用黃絹或深或淺 公卿大夫之妻士民遊女其服無別 或

云王妃夫人以紅爲尙益加繪繡 國官庶民不敢用」이라 함과 같이 高麗婦女는 脂粉 바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나 눈썹은 버들잎처럼 길게 한다. 皂羅로 蒙首라는 것을 만드는데 三幅에 길이는 8尺이나 된다. 이것을 面目만 내어놓고 머리 위에 덮어썼으니 끝은 땅에 닿을 정도이며 白紵로 지은 袍를 입었는데 마치 男子와 같다고 하였다 文綾으로 통넓은 바지를 지어 입었는데 안은 生絹을 넣고 몸에 붙지 않게 넓게 한다.

허리머는 擘欖나무 무늬를 繡놓고 거기에 五色의 끈띠와 金鐸 또는 錦香囊을 차는데 數가 많은 것을 貴하다고 한다.

富貴家の 婦人은 大席을 깔고 옆에 侍婢들이 巾瓶(氷水와 扇子인 것 같다)을 들고 있어서 비록 盛夏에도 더위를 모른다고 한다. 秋冬節에는 黃絹裳을 입는데 服色이 짙고 얇은 것이 있으며 公卿大夫의 妻와 士民遊女(娼妓)의 區別이 없었다고 한다.

或王妃와 같이 지체높은 夫人은 紅色을 좋아하고 거기에 紋樣을 繪繡하여 입으나 一般國官庶民女에게는 不許했다 한다. 이 記錄으로서 當時婦女의 服飾樣式의 輪廓을 알 수 있으니 新羅女人의 裱가 蒙首로 變하고 寬袴 위에 여러겹으로 된 旋裙이라는 치마를 입은 위에 男子袍와 同一한 白紵袍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同書卷二十九供張條에

「紵衣即中單也 夷俗不用純領 自王至於民庶無男女悉服之」

라 하였으니 高麗에서는 男女가 王에서 庶民에 이르기까지 身分의 高下를 莫論하고 中單과 같은 紵衣를 입었는데 純領을 不用했다함은 것에 襟을 둘러지 않았다는 뜻이니 이로서 미루어 보면 衿, 부리, 도련에도 襟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高麗中期에 와서 前代樣式에 比하여 많은 變遷이 있었다는 事實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事實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高麗末期의 遺物인 白紵短袖袍라 할 수 있다.

1973年 12월에 忠南瑞山郡雲山面胎封里에 있는 文殊寺極樂寶殿에 安置되어 있던 金銅如來坐

11) 李晬光, 芝峰類說

12) 今西龍校正, 宣和奉使高麗圖經, 卷二十, 昭和七年, 近澤書店

像에 腹藏되어 있는 많은 遺物中에서 發願者趙
 暉의 白紵短袖袍가 發見되었는데 佛像造成年代
 가 大元至正六年(忠穆王二年)이므로 遺物年代도
 同一하게 看做해야 할 것이다.¹³⁾

이 白紵短袖袍의 構成은 圖 9¹⁴⁾와 같이 裾端
 에는 襷이 없으며 소매가 半袖로 짧고 허리 양
 옆은 X字形으로 깊게 파여져 있는 것이 特色이
 라 하겠으며 고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때까
 지도 허리에 띠를 맸었음이 分明하다.

短袖袍의 短袖는 一世紀間에 亘하여 元에 服
 屬되어 있던 高麗는 元服飾을 踏襲하고 있었으
 므로 元朝에서 많이 着用한 半臂衣를 模倣하여
 만든 것이 아닌가 한다. 卽 短袖를 長袖로 하면
 紵衣(白紵袍)가 될 것이니 이러한 樣式의 袍가
 男女間에 身分差異없이 입었다는 그것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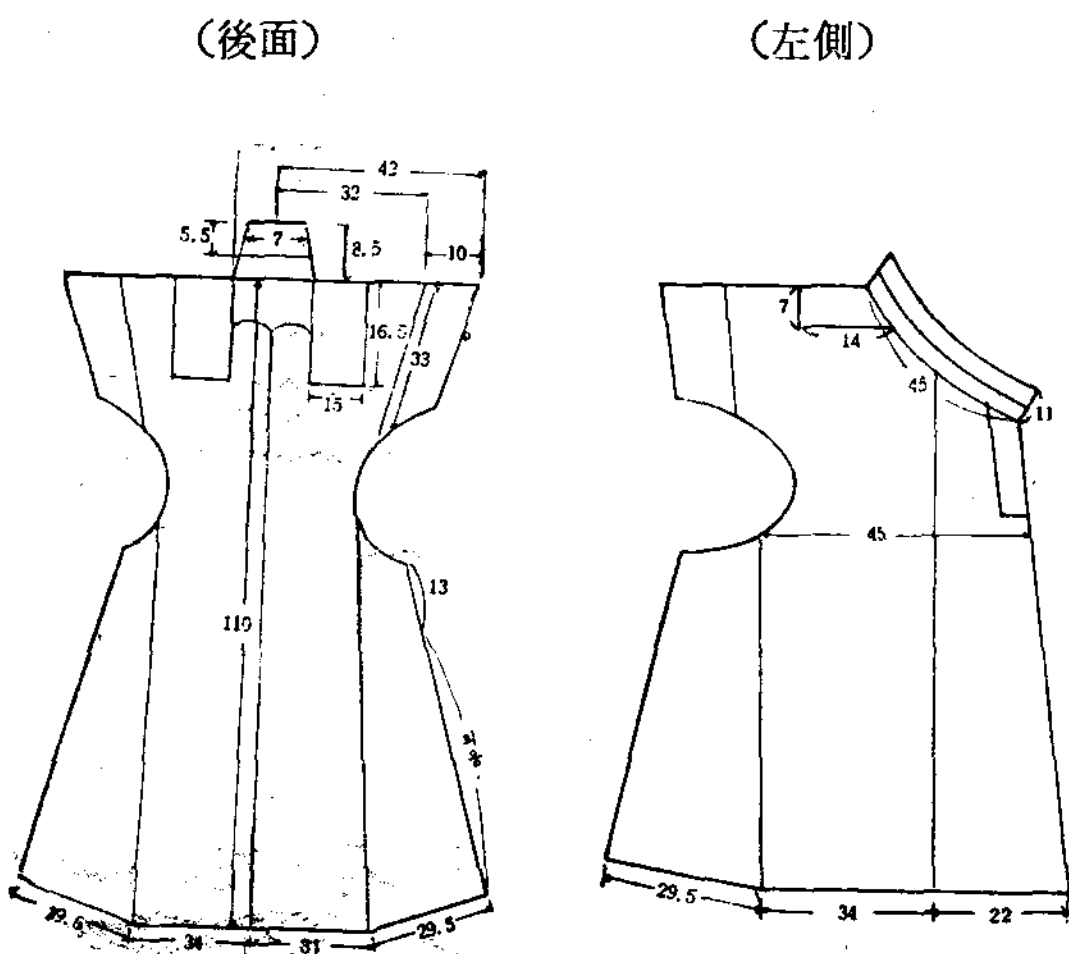


圖 9 高麗白紵短袖袍

蒙古의 元이 高麗王과 公主에게 衣樹를 賜與
 했는데

忠烈王四年八月에

「公主誕辰 皇后賜塔子袍」¹⁵⁾라 하고

忠烈王十五年三月에

「元阿古大 以眞珠衣二領 來獻公主」¹⁶⁾라 하고
 忠烈王十五年六月에

「柳庇還自元帝賜王玉帶 公主金袍」¹⁷⁾라 하고

忠烈王二十三年三月에

「太后餞王及公主于隆福宮 仍賜金段衣」¹⁸⁾

라고 한 것 등이 있다.

여기에 나오는 塔子袍, 金袍, 眞珠衣, 金段衣
 가 어떤 옷인지 알 수 없으나 塔子是 二色으로
 된 花布라는 뜻이고 金을 dazi라 하니 金苔子是
 金錦이라는 뜻이다.¹⁹⁾라 하였으니 金色絲로 華
 麗하게 織成 또는 繪繡한 비단으로 지은 袍일
 것이라 推想할 따름이다.

그리고 高麗史刑法條에

「露衣簞笠兩班妻郊外之服 今賚夫奴隸之妻亦皆
 着 尊卑無別 自今一皆禁斷」²⁰⁾

이라 하였으니 兩班婦女가 郊外로 外出할 때 露
 衣를 입고 양대가 있는 笠을 쓰는데 至今은 庶
 女와 奴婢까지도 이렇게 하므로 尊卑의 區別이
 없으니 兩班妻外는 一切 禁止하기로 했다한다.

그러나 이 法은 遵守되지 않았음인지 朝鮮王
 朝初期에 이 問題가 再次 舉論되었던 것이다.
 露衣는 朝鮮王朝에 있어서 儀禮的 袍衣의 代表
 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었던 옷이다.

④ 朝鮮王朝의 女服袍

太宗十二年六月에 司憲府에서 上疏하기를

「若夫露衣襪裙笠帽尊者之服也 今商賈賤女皆得
 而服之 尊卑無腹辨矣 乞自今四品以上正妻着露
 衣襪裙笠帽 五品以上正妻只着長衫襪裙笠帽 不
 許着露衣」²¹⁾

라 했다. 이것은 高麗의 遺習이 朝鮮王朝에 繼
 承된 것으로 兩班女人이 外出할 때 露衣와 襪裙
 을 입고 笠帽로 얼굴을 가리는데 商人賤女할 것
 없이 다 입어 身分의 尊卑를 辨別할 수 없으니

13) 姜仁求, 瑞山文殊寺金銅如來坐像腹藏遺物調查報告, 1977, 國立博物館美術資料 18號

14) 拙稿, 高麗白紵短袖袍에 關한 史的考察, 1977, 碩士學位請求論文

15) 高麗史, 世家卷二十八

16) 17) 高麗史, 世家卷三十

18) 高麗史, 世家卷三十一

19) 金東旭, 前揭書, p. 66

20) 高麗史, 志卷三十九, 刑法二

21) 太宗實錄卷二十三

앞으로 四品以上正妻에게 限하여 입게 하고 五品以上正妻는 長衫襪裙에 笠帽만을 쓰게 하고, 露衣는 입지 못하게 하자고 하였다.

여기에 있는 露衣의 構成樣式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世祖六年四月에 王世子嬪納徵家禮物目을 보면²²⁾(袍에 관한 것)

大紅段子露衣一(婦人行路表衣制如男子團領而寬大無束帶)

鴉青段子大衣一(婦人表衣有束帶)

金背肩花大紅段子長衫一

各色小襖子八

各色好袖小襖子四(好袖即○袖虛其胷)

白段袂襪裙二

生絹單襪裙二

등이 있다. 其註에 依하면 靈衣는 婦人行路時에 입는 表衣로서 男子의 團領服과 같이 寬大하고 束帶를 하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大衣라는 것은 婦人의 表衣인데 束帶한다고 하였다. 長衫은 肩背에 金色花樣을 繪繡한 것으로 이러한 特殊儀禮用袍衣를 襖 위에 입었던 것이다.

大衣에 對하여 閑靜堂集에

「背子身與衫齊而大袖者今之元衫 但圓衫長袖而兩裾直垂爲異 因圓衫而稍短之則爲大袖禮衣矣(朱子所謂大衣)」²³⁾

이라 하였으니 背子와 圓衫은 길이가 大略같고 大袖는 至今의 圓衫인데 圓衫은 長袖이고 兩裾가 가지런하게 直垂인 것이 다를 뿐이며 圓衫보다 조금 짧은 것이 大袖인데 朱子가 말한 大衣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公同에 「於大袖之上 (加於大袖者必半臂制)」라 있으니

大袖 위에 半臂를 입었던 모양인데 이는 既述한 것과 같이 統一新羅時代의 半臂가 이 때에도 存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圓衫에 關하여

燕山君十一年六月에

「自今除妾子外東西班正職勿論高下 皆許着紗羅

綾段 衣服之者衆則朝廷瞻視必有光彩 自是紗羅綾段其價勇貴 朝士家貧不能質者則以女服造團領 朝賀朝參時太半皆是女圓衫²⁴⁾」

이 記錄에서 燕山朝의 奢侈風潮를 짐작할 수 있는데 兩班正室婦女는 紗羅綾段을 許用하고 朝賀時 內外命婦의 太半은 圓衫을 입었다 하였으니 圓衫은 有品女의 大禮服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 制度는 國末까지 傳習되었던 것이다.

命婦들의 通常小禮服으로 唐衣가 있었는데

光海君二年五月條에

「辛亥傳曰 會命婦時入參人服飾 在平時則當用長衫首飾矣 今則日期臨迫勢難急措依壬寅年嘉禮時禮以涼耳掩唐衣使之戴着入侍²⁵⁾」

即 王이 傳旨하기를 命婦會同時에는 平時라면 長衫을 입는 것이 當然하나 지금은 時日이 臨迫하여 急히 마련하기가 困難하니 壬寅年(宣祖三十五年) 嘉禮時의 例에 따라 涼耳掩과 唐衣를 입고 侍入하라 하였으니 唐衣가 줄잡아서 宣祖朝부터 있었던 옷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光海朝의 唐衣遺物이 1965年 5월에 伽倻山海印寺에 있는 經殿重修時에 光海君의 青直領과 中宮柳氏의 紅唐衣 등이 發見되어 現在 寶物藏에 保管되어 있는데 그 모양은 男子저고리와 비슷하다. 소매길리와 등기장이 저고리보다 길고 양옆이 트이고 曲線으로 되어있어 他衣服과는 特異함으로 이는 光海朝에 있었던 唐衣라 하고 그 構成치수는 圖 10과 같다.²⁶⁾

襪裙이라는 옷은 一名襖裙이라 한 듯하고 그 모양은 女人들의 廣袴와 같이 가랭이의 뒤가트이고 통이 넓은 것으로 이것은 婦女들이 乘馬할 때 입는 輕裝服이라 한다.²⁷⁾ 그리고 小襖子 또는 好袖小襖子라는 것이 있는데 好袖小襖子는 註에(世祖實錄六年四月納徵家禮物) 好袖即袖虛其胷이라 하였으나 어떤 옷인지 알 수 없고, 小襖子는 普通便服袍를 말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小襖子는 우리 固有傳統을 지닌 統一新羅時代의 表衣요 高麗의 紵衣(白紵袍)와 同一系의 袍衣가 아닌가 한다.

22) 世祖實錄卷二十

23) 宋文欽, 閑靜堂集, 卷七雜著

24) 燕山君日記, 卷五十八

25) 光海君日記, 卷二十九

26) 柳英淑外 3名, 光海君衣櫥擬製를 위한 調查研究, 1971, 曉大家政學會誌 Vol. 1

27) 李京子, 嘉禮都監儀軌의 服飾研究, 1977, 服飾創刊號

王朝中期의 便服袍인 小襖子의 樣式은 海印寺에서 發見所藏하고 있는 光海君의 靑袍는 圖 11과 같이 오늘의 두루마리와 別差異가 없으며 이 옷을 直領이라 했는데²⁸⁾ 이것이 當時 男女가 通用했던 袍라고 한다면 高麗紵衣와 比較해 볼 때 많은 變遷이 있었음을 알수 있다.

世祖二年三月에 梁誠之가 上疏하기를

「一禁服妖 盖衣裳之制 所以別男女貴賤也 非下民之所敢擅便者也 今國中女子喜着長衣 若男子然 或以長衣著於衣裳之間成爲三層轉 相慕效 舉國皆然 疑此即史文所謂服妖者也」²⁹⁾

大盖衣服이란 男女貴賤의 區別이 있는 법인데 下民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至今 女人들은 男丁과 간

이 長衣입기를 좋아하고 或 衣裳間에 끼워 입어 三層을 이루기도 한다. 이러한 風習이 舉國的으로 流轉하니 이것이 史文에서 말한 服妖가 아닌지 疑訝스러우니 一切 禁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女人들이 입었다고 하는 長衣는 男子들의 表衣인데 英祖五十二年三月條³⁰⁾에 있는 英祖昇遐時의 襲衣物目중에 長衣, 中致莫, 道袍 縵衣 등의 袍가 있으니 長衣는 男子의 便服袍의 一種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高麗時代以來의 服飾制度로 미루어 본다면 女人도 男子와 같이 便服袍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男裝과 비슷하다하여 服妖라고 禁하자는 問題까지 發生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輿論과 아울러 儒敎的倫理觀에 依한 男女內外法이 嚴格해짐에 따라서 女人들이 外出할 때 袍를 머리 위에 덮어 쓰게 된 것이 成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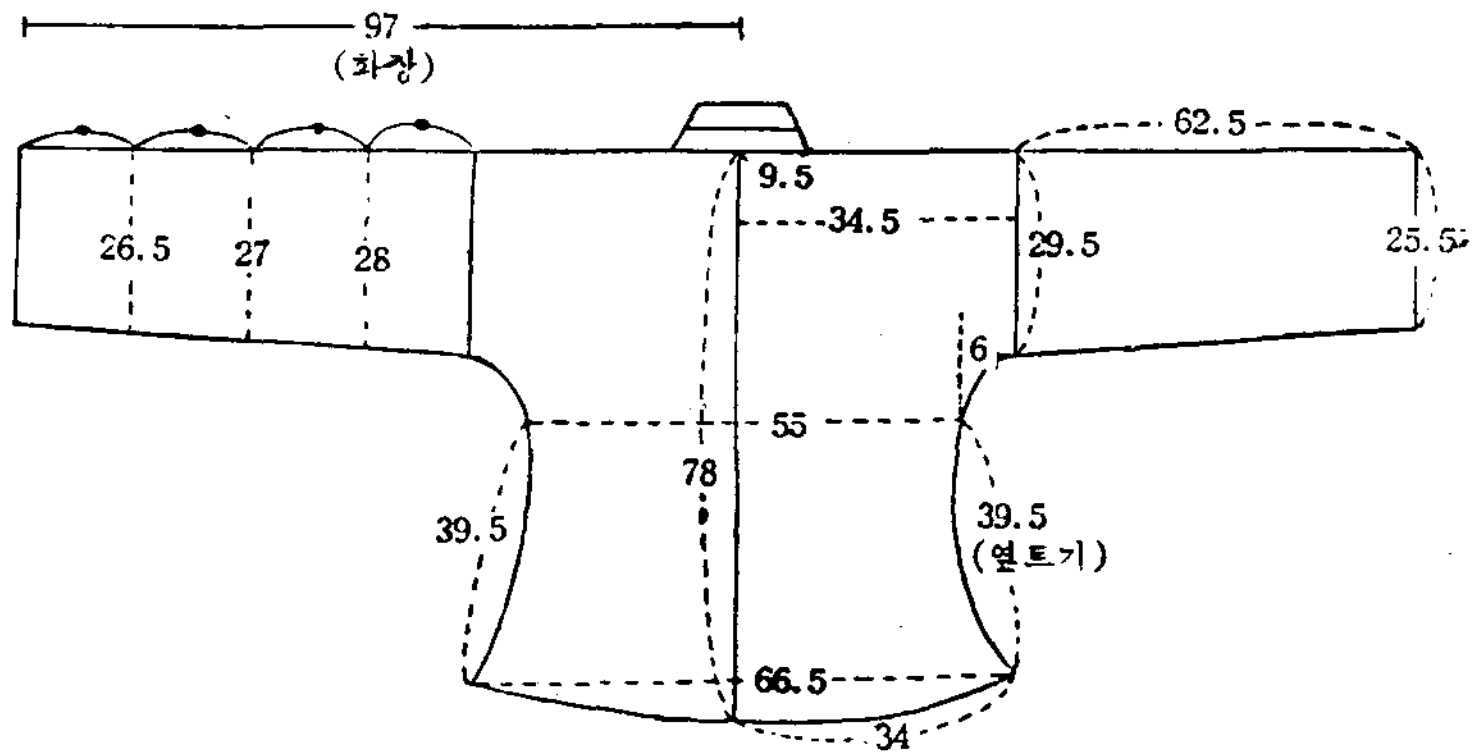


圖 10 中宮柳氏唐衣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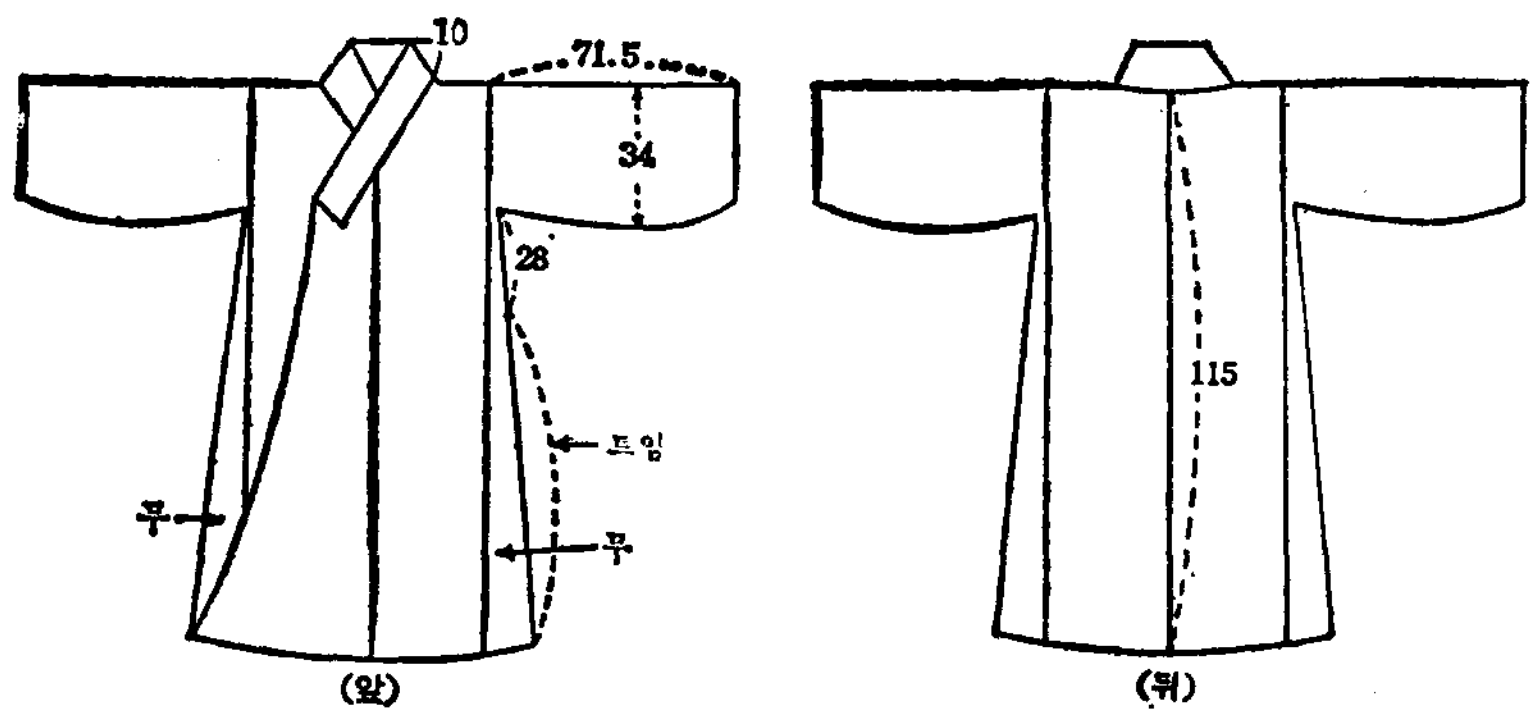


圖 11 光海君直領實測圖



圖 12 申潤福의 風俗圖

化하여 그것이 長衣(장옷)이라는 特殊衣服으로 變遷하게 된 것이고 이와 類似한 衣服인 薦衣, 쓰게치마 등이 發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女人들의 便服袍着用例는 實際로 볼

28) 權桂淳, 遺物上으로 본 李朝中期衣服考, 1973, 曉星女大研究論文集前篇

29) 世祖實錄卷三

30) 英祖實錄卷一二七

수 없게 되었으나

仁祖五年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에³¹⁾

丹紋大紅露衣

大紅胷背長衫

黃紗中衫

白生絹濶汗衫

白絹衫兒

등이 있는데 黃紗中衫 白絹衫兒라는 것이 或 便服袍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實際着用如否가 疑心된다.

光武十年純宗妃嘉禮都監儀軌에³²⁾

大紅露衣

靑胷背鞠衣

四袂襖子

黃紗中袍

綠襖子

洗水長衫

등이나 黃紗中衫이 便服袍와 類似한 것인지, 當時의 遺物調査研究를 課題로 미루는 바이다.

Ⅲ. 結 言

1. 우리나라 袍의 固有樣式은 裾端에 異色襖을 두르고 허리에 띠를 뒤로 맺어 옷깃을 여민 直領窄袖形이다.
2. 三國時代中期에는 中國服飾 영향과 支配層의 權威意識으로 窄袖形이 襖袖形으로 變하고 新羅가 三國을 統合함을 契機하여 唐服飾을 踏襲함으로서 服飾制度에 一大變遷을 가져왔던 것이다.
3. 高麗에서도 白紵袍 또는 紵衣라 하여 男女 貴賤없이 입었으나 裾端에 襖이 없어진것은 一大變化라 할 수 있다.
4. 朝鮮王朝에서는 女人의 袍가 男子의 長衣와 同一하다 하여 服妖라 規定하여 禁하게 됨과 아울러 男女內外法이 徹底해짐으로서 머리 위에 덮어쓰는 長衣(장옷)으로 變한 以後 女人의 便服袍着用習俗은 없어지게 되었으나 開化後에 女性의 社會的 地位가 달라짐으로서 再登場하게 된 것이다.

參考文獻

1. 池內寬, 梅原末治共著, 通溝, 下冊圖版
2. 池內宏, 滿洲國安東省輯安縣高句麗遺蹟, 圖版
3.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1973, 亞細亞文化社
4. 關野貞, 高句麗時代의 遺蹟, 圖版下冊
5.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2冊
6. 權桂淳, 韓國服飾의 文化史的研究, 1969, 曉大研究論文集, 前篇
7. 原田淑人, 漢六朝의 服飾, 1937, 東洋文庫, 圖版 29~34
8. 三國史記卷三十三
9. 前掲書
10. 前掲書
11. 李暉光, 芝峰類說
12. 今西龍校正, 宣和奉使高麗圖經, 昭和七年, 近澤書店
13. 姜仁求, 瑞山文殊寺金銅如來坐像腹藏遺物調査報告, 1977, 國立博物館美術資料 18號
14. 拙稿, 高麗白紵短袖袍에 관한 史的考察, 1977, 碩士學位請求論文
- 15, 16, 17, 18, 高麗史, 世家
19. 金東旭, 前掲書
20. 高麗史, 志卷三十九, 刑法二
21. 太宗實錄, 卷二十三
22. 世祖實錄卷二十
23. 宋文欽, 閑靜堂集, 卷七雜著
24. 燕山君日記, 卷五十八
25. 光海君日記, 卷二十九
26. 柳英淑外三名, 光海君衣櫛擬製를 위한 調査研究, 1971, 曉家政學會誌 Vol. 1
27. 李京子, 嘉禮都監儀軌의 服飾研究, 1977, 創刊號
28. 權桂淳, 遺物上으로 본 李朝中期衣服考, 1973, 曉大研究論文集前篇
29. 世祖實錄, 卷三
30. 英祖實錄卷一二七
31. 白英子, 嘉禮都監을 통해 본 法服의 附隨服飾과 衣櫛에 관한 研究, 1978, 韓國衣類學會誌 Vol. 2, No. 1
32. 白英子, 前掲書

31) 白英子, 嘉禮都監을 통해 본 法服의 附隨服飾과 衣櫛에 관한 研究, 1978 韓國衣類學會誌 Vol. 2, No. 1

32) 白英子, 前掲論文